■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⑰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0조제1항 [] 제40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도지사